

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신청서(학원용)

○ 본 계약의 (이하 “甲”이라 함)와 한솔에너지아카데미학원 (이하 “乙”이라 함)은 “甲”의 다음과 같이 실시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甲	성명		주민번호(*)	
연락처			환급/비환급(*)	<input type="checkbox"/> 환급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환급
주소				
자격여부 (환급 체크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규직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정규직	<input type="checkbox"/> 만 50세이상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근로자카드 신청 (환급 체크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
신청 과정 명		교육기간	비고	
건축사 예비 핵심반(토요일)		2016.03.12. ~2016.04.30		
乙	교육기관	한솔에너지아카데미학원	대표이사	김형중 
주소	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4-13 호성빌딩 2층 한솔에너지아카데미학원		전화	1670-7113
			팩스	02-3462-2470
계좌번호	신한은행 396-05-019084 (예금주 : (주)한솔건설고시학원)	교육비	₩ 451,880 원	
<p><교육규정사항></p> <p>① 계약범위는 노동부로부터의 인정 교육과정으로 해당규정에 한한다.</p> <p>② “乙”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수료기준을 취득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한다.</p> <p>③ “甲”과 “乙”은 본 계약서에 의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과 교육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“甲”은 “乙”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육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교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甲”은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, “乙”은 기 지급된 교육비를 “甲”에게 환불한다.</p> <p>⑤ “乙”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인정 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,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“乙”의 귀책사유로 관할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교육과정이 취소되어 “甲”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“乙”이 책임을 진다.</p> <p>⑥ 본 계약서상의 조준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한 바에 따른다.</p>				
2016 년			월	일
			서명	

(주)한솔건설고시학원(www.inup.co.kr)귀중